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2015. 12. 1.(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1월 25일

(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조병옥)

가. 제안이유

- 「상위법인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불합리한 사업시행자를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
- 권한 위탁 취소의 사유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공사업 시행자중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일부 삭제(안 제8조제1항)
- 권한의 위탁과 관련한 위탁 취소 규정 신설(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의 자전거 도로 의무설치 조항을 상위법령과 맞추어 통일성을 기하고,
-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에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탁의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의 자전거도로 의무 설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,
- 기타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인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불합리한 사업시행자를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,
- 권한 위탁 취소의 사유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업도시·혁신도시 등의 신도시, 관광단지 개발, 재건축·재개발,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”을 “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2.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
3. 수탁자가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
4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 도로를 개설·확장·재정비하거나 <u>기업도시·혁신도시 등의 신도시, 관광단지 개발, 재건축·재개발,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자전거도로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0조의2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</u></p> <p><u>2.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이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<u>3. 수탁자가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4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5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</p> <p>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u></p>

관련법령

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12조(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 도로를 개설·확장·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1.19.>